



「강남구-동덕여자대학교」

# 2015 강남 그랜드 세일 디자인 개발사업 협약서

2015. . .



## 2015 강남 그랜드 세일 디자인 개발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와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동덕여대'라 한다)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2015 강남 그랜드 세일 디자인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강남구와 동덕여대가 민관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강남 페스티벌의 연계행사인 2015 강남 그랜드 세일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상권 상인회 및 그랜드 세일 참가업체에게 활용하게 하여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있다.

제2조(사업내용) 개발사업의 내용과 조건은 아래와 같다.

- 가. 사업명칭 : 2015 강남그랜드 세일 디자인 개발사업
- 나. 개발주체 : 동덕여대 산학협력단
- 다. 대 상 : 강남구 소재 상권 중 2015 강남그랜드 세일 참가 업체
- 라. 개발내용 : 메인 포스터, 배너, 로고, 할인 쿠폰북 등 관련 디자인 제작
- 바.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5. 9. 30까지

제3조(역할분담)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강남구와 동덕여대는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한다.

- 가. 강남구 : 디자인개발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개발지원
- 나. 동덕여대 : 2015 강남그랜드세일 관련 디자인 개발
  - ※ 과제수행 : 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학과 성근현 지도교수 외 디자인대학 학생
- 다. 상인회 등 : 그랜드 세일 참가업체 모집, 사진제출, 개발된 디자인 활용 상권 등 홍보

제4조(사업수행) '동덕여대'는 '강남구'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있어 관계법령과 제반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강남구'는 '개발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동덕여대'의 요청에 따라 지원한다.

가. 보조금액 : 금오백만원정(₩5,000,000원)

나. 지급시기 : 디자인 개발 종료 후 15일 이내

다. 지급방법 : '동덕여대' 지정계좌로 이체

제6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동덕여대'는 '개발사업'의 전반에 걸쳐 사업수행자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관리와 사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관리 조례' 및 '동덕여대 산학협력단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 집행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를 본 협약의 만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강남구'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동덕여대'는 사업완료 후 최종보고서 및 결과물을 '강남구'에서 정한 시기와 형식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덕여대'는 보조금 사용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강남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강남구'의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잔액(집행잔액 및 불인정분금액)을 지정한 기한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강남구'는 사업비 정산과 관련한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덕여대'와의 협약 해약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강남구'와 '동덕여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강남구'와 '동덕여대'는 '개발사업'의 전과정에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요청을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 강남구와 동덕여대는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강남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동덕여대'에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 '강남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종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라. 기타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협약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보고서 및 집행잔액(사업비 미사용분)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물의 활용) ① 본 '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물은 '동덕여대', '강남구' 및 강남구가 인정하는 업체'에서 협약의 목적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② '동덕여대'는 '개발사업' 성과물을 '강남구'에 제공하여야 하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 협약으로 얻어진 성과물을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동덕여대' '강남구'가 공동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2조(정보보호) '동덕여대'는 본 '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은 '강남구'(참가업체)에 관한 정보 등을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강남구'와 '동덕여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남구'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강남구'와 '동덕여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

(인)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